

## 부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. 3. 7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2. 3. 7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9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2. 3. 15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명호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(안 제9조)

○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6월 16일~6월 30일에서 매년 7월 16일~7월 31일로 조정함(안 제27조의2)

○ 상속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, 호주 승계인, 연장자순으로 정함(안 제36조제2항)

○ 담배소비세 가산세 중 환급을 환부로 조정함(안 제76조제2항제3호)

- 재산세와 병기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 고 납기를 6월 16일~6월 30일에서 매년 7월 16일~7월 31일로 조정함(안 제97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수정 의결해도 문제는 없습니까?	<input type="radio"/> 별문제 없습니다.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- 없음

#### 나. 반대토론

-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### 6. 수정안요지

- 별첨

### 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##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563호
의결년월일	2002. 3. 20 (제94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3. 19

제출자 : 기획재정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- 제9조제4항 중 “위원의 임기는”을 “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”으로 하였으나, 위원장은 위원 속에 포함되므로 위원장의 임기를 추가할 필요없이 현행대로 하고
- 제9조제5항 중 부천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 앞에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삽입하였으나 위원회설비변상조례에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” 규정하고 있어 현행대로 함

### 2. 주요골자

- “위원장 및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함(안 제9조제4항)

-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로 함(안 제9조제5항)

###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위원장 및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,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  ④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<u>부천</u> <u>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</u> 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.	③ 위원장 및 위원..... ..... ..... ..... ④ ..... ..... ..... .....	③ 위원..... ..... ..... ..... ④ ..... ..... <u>부천</u> <u>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</u> ..... .....

[수정안 포함]

###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시세”를 “지방세”로 하고 동조제1항 중 “시세에 관한”을 “지방세에 관한”으로 하며  
“시세심의위원회(이하 이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와 시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  
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”를 “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”로 하고 동조 “제2항  
내지 제5항”을 “제3항 내지 제6항”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하 “과세표준심의위  
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종전 제9조제2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”로 한다.

제2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과세기준일 및 납기)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고 하고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

31일까지로 한다.

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1.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
2. 호주승계인
3. 연장자

제76조제2항제3호 중 “환급을”를 “환부를”로 한다.

제97조 중 건축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 세 대 상	과 세 기 준 일	납 기
건 축 물	매년 6월 1일	매년 7월 16일~7월 31일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시세심의위원회 등)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(이하 이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와 시세관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.</p> <p>(신설)</p> <p>②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</p> <p>④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⑤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9조(시세심의위원회 등) ①지방세에 관한 ..... .....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하 “과세표준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③.....</p> <p>④.....</p> <p>.....</p> <p>⑤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⑥.....</p>

(신설)

제36조(납세의무자)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(신설)

## 제76조(가산세) ①(생략)

## ②(생략)

1. 및 2. (생략)

3.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

## 4. (생략)

## ③(생략)

제97조(과세기준일 및 납기)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.

제27조의 2(과세기준일 및 납기)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,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6조(납세의무자) ①.....  
.....

②과세기준일 현재 산속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1.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

2. 호주승계인

3. 연장자

제76조(가산세) ①(현행과 같음)

②(현행과 같음)

1. 및 2. (현행과 같음)

3. .....  
.....환부를.....

4. (현행과 같음)

③(현행과 같음)

제97조(과세기준일 및 납기) .....  
.....

과세대상	과세기준일	납 기	과세대상	과세기준일	납 기
건축물	<u>매년 5월 1일</u>	<u>매년 6월 16일</u> <u>~6월 30일</u>	건축물	<u>매년 6월 1일</u>	<u>매년 7월 16일</u> <u>~7월 30일</u>
토지	매년 6월 1일	매년 10월 16일 ~10월 31일	토지	매년 6월 1일	매년 10월 16일 ~10월 31일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	④위원장 및 위원..... .....	④위원..... .....

<p>④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<u>부천</u> <u>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</u>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⑤ ..... ..... <u>예산</u> <u>의 범위</u> 안에서 <u>부천시위원회</u> <u>설비변상조례</u>..... .....</p>	<p>⑤ ..... ..... <u>부천</u> <u>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</u>..... .....</p>
---	---	---